

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 · 시행지침

□ 관련법령

- (소방공사업법)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완공검사증명서 교부
 - * 완공검사 신청서류 :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, ② 감리결과보고서
- (소방시설법)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로 같음, 사용승인기관은 교부된 완공검사증명서 확인
 - * 건축법, 주택법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미포함 / 증명서 확인시점도 불명확

□ 문제점 및 운영실태

- (시공) 사용승인일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업체에 무리한 공사 요구
 - ↳ 사용승인 1달 전 인테리어 집중, 소방시설공사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완공신청
 - (감리) 감리자 79.5%가 건축주로부터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강요 받음
 - ↳ 소방시설성능 및 시공이 미흡한 상태로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, 강요자 처벌규정 미비
 - (완공처리) 건축물 공정률 관계없이,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완공신청
 - ↳ 감지기 선로만 연결 미부착 상태 완공, 감지기.SP헤드 페인트칠 등 성능장애
- ※ (사용승인) 완공검사 후 사용승인까지 평균 34.3일, 최장 619일 소요
- ↳ 완공 후 소방기술자(감리자) 철수, 사용승인일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 소방시설 훼손

< 책임소재 >

- 완공검사 후 사용승인일 사이 소방시설 훼손 시 책임소재 불명확
 - ↳ 소방시설 훼손 처벌규정 미비, 훼손책임 불명확으로 업체 하자보수부담 가중



1) '19년 소방청에 대한 감사원 「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」

□ 개선 · 시행 지침

- **(절차개선)**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*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**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**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

* 건축법 제22조, 주택법 제15조·제49조, 학교시설축진법 제4조·제13조 등의 승인을 말함.

↳ (처리기한)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(3일), 건축법(7일), 주택법(15일), 학교시설(14일)

- **(감리기간 연장)**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,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·감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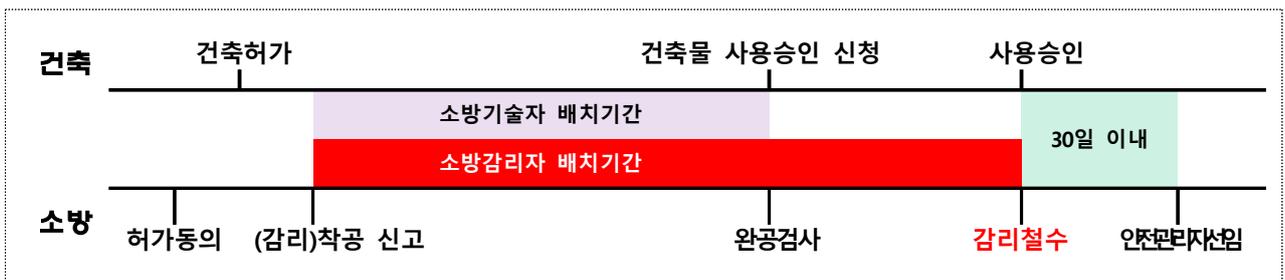
* (현재) 착공일 ~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→ **(개선) 착공일 ~ 사용승인일까지**

↳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(발주자)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

- **(감리철수)**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*

*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(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~ 사용승인일까지 결과),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

↳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



□ 향후계획

- **(의견수렴 등)** 시·도, 협회 등에서는 본 지침에 따른 운영·실무상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의견제출(수시) /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

- **(법령개정)** 소방시설공사법령 개정 추진 - '20년 하반기(소방청)